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59
----------	------

2025년 4월 25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결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년 2월 3일

다.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라. 상 정 일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3월 4일 상정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의결(완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성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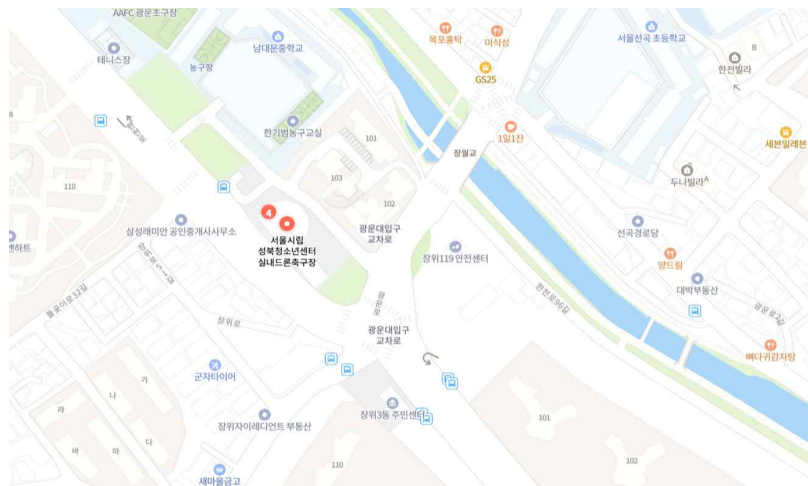
-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 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660-9 (개관일자 : 2002. 9. 1.)
- 시설규모 : 부지 2,679m² / 건물 5,726m²
- 주요시설 : 수영장, 스터디카페, 청소년아지트, 드론축구장, 디지털하이브리드 U-스페이스, 세미나실, 다목적활동장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193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73백만원, 운영비 641백만원, 사업비 2,185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94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 성북청소년센터(이하 ‘성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5.7.~2028.6.) 운영할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660-9
- 개관일자 : 2002.9.1.
- 시설규모 : 부지 2,679m² / 건물 5,726m²
- 주요시설 : 수영장, 스터디카페, 청소년아지트, 드론축구장, 디지털하이브리드 U-스페이스, 세미나실, 다목적활동장 등
- 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193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73백만원, 운영비 641백만원, 사업비 2,185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4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성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진흥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평생교육국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성북청소년센터는 2002년 개관하여 2020년부터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이하 '광운대학교')에 위탁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시설로, 34명(정규직 20명, 계약직 14명, 2025.1. 기준)의 직원이 41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 22개 사업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성북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2002.09.01.~2005.07.31.)	(사)한국스카우트연맹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2005.08.01.~2008.07.31.)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공개모집
3차 위탁	3년(2008.08.01.~2010.06.3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재계약
4차 위탁	2년(2010.07.01.~2013.06.3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공개모집
5차 위탁	3년(2013.07.01.~2015.06.3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재계약
6차 위탁	2년(2015.07.01.~2018.06.3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공개모집
7차 위탁	3년(2018.07.01.~2020.06.3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재계약
8차 위탁	3년(2020.07.01.~2023.06.30.)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공개모집
9차 위탁	2년(2023.07.01.~2025.06.30.)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재계약

〈 성북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명)

	총계	일반직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8	28	1	1	1	3	4	7	6	3	2	-	-	-
현원	34	20	1	0	1	1	4	6	6	1	-	14	10	4

〈 성북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예산	계		4,193,400	100%	4,290,015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811,285	43%	1,901,900	44%
		민간위탁사업비	555,000	13%	555,000	13%
	보조금	국비보조금	-	-	-	-
		시비보조금	-	-	-	-
		구비보조금	-	-	-	-
	사업수입	시설이용료 수입	1,805,343	43%	1,805,343	42%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		-	-
		이월금	5,000	1%	5,000	-
		예수금	10,020		10,020	-
		기타잡수입	6,752		6,752	-
세출예산	계		4,193,400	100%	4,290,015	100%
	인건비		1,273,554	30%	1,369,227	32%
	운영비		641,056	15%	642,000	15%
	사업비		2,184,824	52%	2,184,824	51%
	사업외지출		10,000	3%	10,000	2%
	예비비		30,000		30,000	
	지난년도지출		53,164		53,164	
	반환금		800		800	
	일반관리비		-	-	-	-
	이윤		-	-	-	-
	부가가치세		-	-	-	-

〈 2025년 시립성북청소년센터의 사업추진계획 중 발체 〉

(단위 : 명, 천 원)

구분/사업/프로그램		내용	계획인원	소요예산	
				수입	지출
총 계		7분야, 22사업, 60프로그램	358,396	2,522,818	1,585,824
	시설이용	3개 사업 4개 프로그램	3,275	12,710	0
	시설대관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3,200	10,200	0
	회원편의시설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0	2,160	0
	생활체육시설사용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75	350	0
교육문화사업		1개 사업 5개 프로그램	105,488	730,482	439,650
생활체육사업		1개 사업 6개 프로그램	103,152	853,271	271,648
목적사업		7개 사업 22개 프로그램	113,740	308,430	270,420

청소년중심활동	1개 사업 4개 프로그램	4,120	180	10,800
진로활동	1개 사업 7개 프로그램	2,030	38,250	23,720
인증활동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90	750	1,250
지역연계활동	1개사업 2개 프로그램	30,000	0	4,400
청소년전용시간제	1개 사업 3개 프로그램	75,500	214,000	202,000
데이터사업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2,000	0	13,950
특화사업	1개 사업 3개 프로그램	0	55,250	14,300
상담사업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1,651	60,370	63,831
기타사업	1개 사업 4개 프로그램	0	40,080	22,800
민간위탁사업	8개 사업 17개 프로그램	31,090	517,475	517,475
방과후아카데미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13,800	257,174	257,174
청소년배치지도자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0	25,584	25,584
찾아가는청소년센터	1개 사업 3개 프로그램	2,000	11,657	11,657
유스데이	1개 사업 6개 프로그램	2,140	11,103	11,103
특성화사업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11,400	56,750	56,750
청소년코디네이터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0	40,007	40,007
수상안전요원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0	55,200	55,200
기타보조사업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1,750	60,000	60,000

- 본 동의안과 같이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의 성과를 2024년 3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현재의 성북청소년센터를 본 평가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의회가 본 동의안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은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성북청소년센터 운영평가(2023년)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주)가치경영원]
- 평가기간 : 2023년도(실시기간 2024.3.~8.)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91.19점(100점 만점)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는 성북청소년센터 평가에서 3가지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퇴사 관련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성북청소년센터 성과보고서 중 개선요청사항 〉

개선요청 사항

- 수탁사업 담당자 변경 14건 중 12건의 사유가 퇴사로 확인됨.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지만,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만족도 제고 활동을 통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함
- 평가년도 전체예산 집행률은 82.91%로 저조하며, 분기별 집행률의 경우 1분기 60.68%, 2분기 66.61%, 3분기 103.84%, 4분기 100.58%로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 집행률은 87.14%로 연간 사업비 집행률 상승 노력이 요구됨. 1분기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청소년정책과는 ‘계약직 직원의 퇴사’로 인해 이직율이 높다고 답변하고 있음.
 -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책임과 명의로 수행해야 하고, 높은 이직률의 원인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수탁법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책임으로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 후 적절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단기 계약직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북 청소년센터는 위탁사무 대부분을 단기 계약직으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의 목적은 수탁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단기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 평생교육국이 단기인력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과도한 단기인력에 대해 평생교육국의 합리적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5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

< 000 위원 >

-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직이나 퇴사가 많고 인력이 정원보다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책이 있으신지.

<소관부서[청소년정책과]>

- 정현원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 이고요. 이직률이 높은 거는 청소년센터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다 보면 계약직 직원을 장기적으로 1년 단위로 뽑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직률이 생기고, 또 민간 업장이다 보니까 재단이나 이런 안전한 직장에 옮겨가기도 해요. 그래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연차 같은 것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소관부서[청소년정책과]>

-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재단이직이 있고 개인적 사유가 좀 많긴 합니다. 새로운 일터로 옮겨가기도 하고. 제일 많은 건 개인사유입니다.

- 자립형 시설인 성북청소년센터의 정원이 28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20명(행정인력 포함)만을 운영하고 있고, 계약직은 14명(계약직10명, 촉탁직 4명)으로, 계약직의 비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형 시설의 경우 더 많은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국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이 운영비 절감 또는 마련을 위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평생교육국의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의 과도한 이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센터 중 자립형시설과 지원형 시설

- 구분 기준 : 수익시설(수영장 등)의 존재 유무
- 자립형시설 (14개소) : 문래, 목동, 수서, 노원, 강북, 구로, 성북, 마포, 은평, 성동, 금천, 망우, 동대문, 서대문
- 지원형시설 (7개소) : 서울, 강동, 중랑, 창동, 광진, 화곡, 보라매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는 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이며 핵심적인 사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사무의 전체 과정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3자 위탁으로 간주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다시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동의안과 같이 제출된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경우 수탁사무의 일부(식당운영, 카페운영 등)를 제3자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성북청소년센터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전체 또는 대부분을 내부직원(정규직+비정규직)이 아닌 강사를 선발하여 전담 하게 하고 있음.

- 성북청소년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는 2025년 채용관련 공고가 10건이 있었으며, 그 중 4건은 최종합격 공고로, 최종합격자는 총 44명에 달하나, 이는 정·현원에도 포함되지 않는 인원으로 보이고,
 - 청소년활동 중 중요 프로그램인 교육문화사업 등을 외부 인력(강사)에게 맡기는 것은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하겠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라고 사료됨.

※ **2025년 성북청소년센터 최종합격자 수 : 44명**

- 2025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동행캠프) 강사 최종 합격자 : 7명
- 2025년 성북청소년센터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 최종 합격자 : 29명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전문체험 강사 최종 합격자 안내 : 4명
- 2025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수학,영어,AI) 최종 합격자 안내 : 4명

- 평생교육국은 직원 외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 것이 제3자 위탁인지 용역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의 책임하에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도 않으며, 법률 규정(「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위배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입(지도·점검 및 관리·감독)도 없이 방관하는 것으로 보여,
- 평생교육국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 중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고, 다수의 민간위탁 시설을 손쉽게 운영하려는 행정편의만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수의 강사를 활용하는 성북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위탁기관의 책임성 또는 전문성 등은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평생교육국도 이를 방관하여 본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생교육국이 청소년시설을 직영(평생교육국이 자격 있는 자와 프로그램별, 사업별 위수탁계약 추진 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성북청소년센터 누리집의 채용관련 게시글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 및 학교연계 강사 서류합격 및 면접보고	관리자	25.02.14	146
53	2025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수학,영어,AI) 최종 합격자 안내	관리자	25.01.24	137
52	2025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서류 심사 합격자 및 면접 일정 안내(수학,영어,AI)	관리자	25.01.22	143
51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전문체험 강사 최종 합격자 안내	관리자	25.01.20	173
50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전문체험 강사 서류합격 및 면접보고	관리자	25.01.17	162
49	2025시립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강사(수학, 영어, AI 부분)모집	관리자	25.01.14	213
48	2025년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 강사 모집	관리자	25.01.10	1,234
47	2025시립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문체험활동)강사 모집 공고	관리자	25.01.08	396
46	2025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동행캠프) 강사 최종 합격자 안내	관리자	25.01.08	150
45	2025년 성북청소년센터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 최종 합격자 명단	관리자	25.01.07	205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459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성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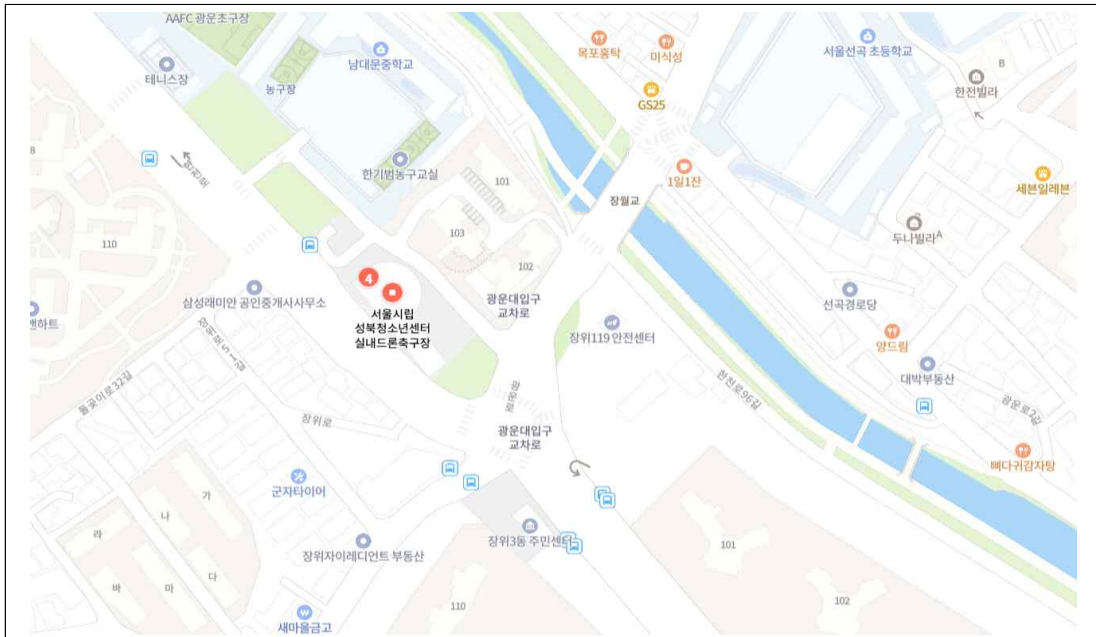
-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660-9
- 개관일자 : 2002. 9. 1.
- 시설규모 : 부지 2,679m² / 건물 5,726m²
- 주요시설 : 수영장, 스터디카페, 청소년아지트, 드론축구장, 디지털 하이브리드 U-스페이스, 세미나실, 다목적활동장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7.1. ~ 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193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73백만원, 운영비 641백만원, 사업비 2,185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4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02-2133-4124)